

청주지방법원 2024. 4. 25 선고 2023가단7438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3. 28.

판 결 선 고 2024. 4. 25.

주 문

1. 피고와 C{D생}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2020. 9. 14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20. 9. 18. 접수 제158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E 주식회사(이하 ‘E’이라 한다)는 2017. 6. 10.경 F카드의 C에 대한 11,781,907원 및 그 중 10,841,3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고, 원고는 2020. 6. 29.경 C에 대한 위 채권을 E로부터 재차 양도받았다.

나. C의 부(父)인 망 G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소유하던 중 2011. 1. 6. 사망하였고,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H와 자녀인 I, J, K, C, 그리고 피고가 있다.

다. 피고와 H, I, J, K, 그리고 C은 2020. 9. 14.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(이하 ‘이 사건 협의분할’이라 한다)을 하였고, 피고는 2020. 9. 18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한편, C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(2/13 지분)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, 2017년경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변제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21. 7. 30.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등(2017개회1009057) 채무초과 상태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원고가 E로부터 양수한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,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,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

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), C의 자력이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인 C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며, 수익자이자 C의 오빠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2) 이에 대해 피고는,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 그 대지를 포함하여 피고의 형제들이 매수한 것으로서, 그 중 대지에 대하여만 2010. 5. 20.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형제들이 상의하여 2010. 7. 8. 그 명의만을 망인 명의로 한 것에 불과하고,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의 채무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

그러므로 살피건대,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0. 7. 8.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그 대지인 충북 진천군 L 대 499㎡에 대하여는 2010. 5. 20.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, 피고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다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2/13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남동희

별지